



의안번호	제70호
------	------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
--

제 출 자	논산시장
제출연월일	2018. 8. 28.

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70호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8. 28.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하여 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정비하고,
- 나. 묘지설치 사용면적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부개정을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설, 공동묘지의 점유면적 제한을 6.6㎡를 10㎡로 하고 9.9㎡를 15㎡로 변경함.(안 제15조)
- 나. 「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」 개정에 따른 장사 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료를 변경함.(안 제16조 별표2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기타사항
 - (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 - (2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
 - (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아님
 - (4)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
 - (가) 예고기간 : 2018. 07. 03 . ~ 2018. 07. 23. (20일 이상)

(나) 결과 : 의견없음

(5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(6) 충청남도소관실과 : 충청남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중 “6.6제곱미터”를 “10제곱미터”로 하고 “9.9제곱미터”를 “15제곱미터”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100세행복과장	이 은 정
	동고동락팀장	김 영 준
	담 당 자	김 미 애 (746-5333)

[별표 2]

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료 (제16조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1기당 기준면적 (합장)	허가신청서 납부금액			사 용 자 부 담 액			
		계	사용료 (30년)	관리비 (30년)	계	인건비	비석대	잔디료
거주자	공설 묘지 10㎡ (15㎡)	300,000 (400,000)	250,000 (350,000)	50,000 (50,000)	※ 실비 적용			
	공동 묘지 10㎡ (15㎡)	50,000 (70,000)	50,000 (70,000)	-				
비거주자	공설 묘지 10㎡ (15㎡)	400,000 (400,000)	350,000 (350,000)	50,000 (50,000)	※ 실비 적용			
	공동 묘지 10㎡ (15㎡)	100,000 (130,000)	100,000 (130,000)	-				

※ 거주자 :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

□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											
제15조(사용면적) 공설, 공동 묘지는 1기당 점유면적 <u>6.6제</u> <u>곱미터</u> 이내로 한다. 다만. 합장하는 경우에는 1인당 <u>9.9</u> <u>제곱미터</u> 를 초과할 수 없다.		제15조(사용면적) 공설, 공동 묘지는 1기당 점유면적 <u>10제</u> <u>곱미터</u> 이내로 한다. 다만. 합장하는 경우에는 1인당 <u>15</u> <u>제곱미터</u> 를 초과할 수 없다.													
[별표 2]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료 (제16조 관련) (단위 : 원)		[별표 2]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료 (제16조 관련) (단위 : 원)													
구	분	1기당 기준 면적 (합장)	허가신청서 납부금액			사			용			자			
			계	사용료 (15년)	관리비 (15년)	계	인	비	잔	계	건	비	단	료	
거	주	자	공설	6.6㎡	300,000	250,000	50,000	※	살	비	적	용	자	적	
			묘지	(9.9㎡)	(400,000)	(350,000)	(50,000)								
거	주	자	공설	10㎡	300,000	250,000	50,000	※	살	비	적	용	자	적	
			묘지	(15㎡)	(400,000)	(350,000)	(50,000)								
비	거	주	자	공설	6.6㎡	400,000	350,000	50,000	※	살	비	적	용	자	적
				묘지	(9.9㎡)	(400,000)	(350,000)	(50,000)							
비	거	주	자	공설	10㎡	400,000	350,000	50,000	※	살	비	적	용	자	적
				묘지	(15㎡)	(400,000)	(350,000)	(50,000)							
비	거	주	자	공설	6.6㎡	100,000	100,000	-	※	살	비	적	용	자	적
				묘지	(9.9㎡)	(130,000)	(130,000)	-							
비	거	주	자	공설	10㎡	100,000	100,000	-	※	살	비	적	용	자	적
				묘지	(15㎡)	(130,000)	(130,000)	-							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해 당 없 음

2. 비용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나. 추계결과

3. 작성자

100세행복과장 이 은 정

참고 1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

제18조(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) ① 공설묘지, 가족묘지, 종중·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(床石)·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(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)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,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분묘,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·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15조

제15조(사용면적) 공설, 공동묘지는 1기당 점유면적 6.6제곱미터 이내로 한다. 다만, 합장하는 경우에는 1기당 9.9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.

참고 2**법제처 규제개선 정비대상 등 반영내용**

연번	조례 위임사항	조례 위임사항 개정이유	조례 개정반영
1	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제1항에서 분묘의 점유면적의 상한을 10제곱미터(합장의경우15제곱미터)규정하고 있는데, 조례에서는 이와 다르게 점유면적을 축소되어 규정하고 있음	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제1항에 맞게 분묘의 점유면적을 확대하여 장사시설의 설치·조성 및 관리에 주민 편의 보장	안 제15조 분묘의 사용면적 확대
2	(별표 2)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함	(별표 2)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료를 기준면적 및 사용년도 개정하여 주민 편의 보장	안 제16조 별표2